

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) ① 부과권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(이하 “과징금납부의무자”라 한다)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
2.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
3.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부과권자가 인정하는 경우

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

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과권자에게 신청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,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,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.

④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.

1.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
2.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부과권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3. 강제집행, 경매의 개시, 파산선고, 법인의 해산,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부과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2(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) ① 부과권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(이하 “과징금납부의무자”라 한다)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.</u> <u>1.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</u> <u>2.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</u> <u>3.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</u> <u>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</u>

있다고 부과권자가 인정하는
경우

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
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
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
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
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
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
류를 첨부하여 부과권자에게 신
청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
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
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
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
터 1년 이내로 하고, 각 분할된
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
내로 하며, 분할납부의 횟수는
3회 이내로 한다.

④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납
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
하기로 결정된 과징금납부의무
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
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
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
할 수 있다.

1.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
2.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부과권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3. 강제집행, 경매의 개시, 파산선고, 법인의 해산,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